

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30.(화) 10:00]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
검 토 보 고 서



2024. 4.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

검 토 보 고 서

2024년 4월 30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33
- 나. 제 출 자: 강서구 등촌로39길 17-8 최○열 외 110명
- 다. 제출일자: 2024년 3월 5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3월 11일

2.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85조 ~ 제88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 제59조
-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3. 청원요지 (소개의원: 한상욱 의원)

- 강서구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
- 등촌2동은 마곡 신도심 및 인근 양천구와 비교하여 문화 및 체육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건물을 존치 후 구민들의 편의시설로 전환을 청원함

4. 소개의원 청원소개 의견서

- 강서구청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기존의 구청 자산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바,
- 등촌2동 주민들은 구의회 건물을 존치 시켜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 시설 등으로 사용을 요구함
- 또한, 기부채납 건물에 입주 예정인 등촌2동 주민센터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의회 건물로 입주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의 사용을 위해 구민들은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를 요청함

5. 검토의견

가.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의회 청사 매각에 반대하여 강서구의회 토지 및 건물을 존치 후 구민들의 편의시설로 전환을 요청함

나. 청원의 검토

1)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매각 개요

강서구의회 청사 매각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제275회 임시회에 강서구청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2026년 일괄매각 추진 예정임

※ 청사 매각대상 현황 [2개법인 산술평균 탁상감정가(2023.12월)]

명 칭	소재지	건축 연월일	면적			감정평가액
			대지	건물	(층별)	
합 계			6,228.4	14,230.86		1260.3억
가양동별관	가양동 1488-9	1999.02.23.	948.9	3,773.45	지상6 지하2	계: 133.12억 토지: 104.38억 건물: 28.74억

구의회	등촌동 512-1	1996.12.27.	1,938.6	5,448.19	지상5 지하2	계: 354.66억 토지: 315.02억 건물: 39.64억
보건소	염창동 275-12	1991.04.13.	2,929.3	3,896.95	지상4 지하1	계: 723.73억 토지: 701.57억 건물: 22.16억
화곡동별관	화곡동 980-29	2005.12.23.	411.6	1,112.27	지상5 지하1	계: 48.79억 토지: 38.69억 건물: 10.10억

2) 통합신청사 조성 예산 추계

-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239억으로 현재 확보된 청사건립재원 1,731억원을 투입하고도 별도 재원이 필요한 상황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반영된 4개 청사 매각 시 1,260억 확보로 기금 전출금 없이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 가능

구분	부지매입비	기금 전출금	기금이자	특별조정 교부금	합계
기확보	174	1,210	263	84	1,731
필요(예상)금액	249	1,148	51	60	1,508
합 계					3,239

다. 종합 의견

- 청사 매각 여부는 구 재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강서구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
- 다만, 청사 매각으로 인해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사료됨
-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의 적정성과 주민 편의성을 검토하여 답하여 줌이 적정하다 봄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